

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2001- 47

제안년월일 : 2001. 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처분코자 하는 재산 (토지 6필지, 22,811m²)

- 일단의 면적이 700m²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매각 ⇒ 3필지, 420m²
- 경영치수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토지를 매각⇒ 3필지, 22,391m²

2. 처분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 (공시지가)	비고
매각	토지	위천면 장거리 514-7	대	34	1,026	30,200원
		위천면 장거리 514-8	대	18	228	12,700원
		위천면 모동리 271-2	답	368	1,210	3,290원
		가조면 일부리 1237-38	하천	18,392	1,343,460	표준지 60,000원
		가조면 일부리 681	답	130		
		가조면 석강리 1378-53	하천	3,869		

※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님으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.

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: 공유재산 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서